

보도 일시	2022.4.6.(수) 조간 2022.4.5.(화) 11:00	배포 일시	2022. 4. 5.(화) 06:00
담당 부서	어촌양식정책관실 양식산업과	책임자	과장 고송주 (044-200-5630)
		담당자	서기관 오성현 (044-200-5637)

전기 배터리로 은어, 쏘가리 등 민물고기를 잡으면 안돼요

-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 일제 민·관 합동단속 실시(4.6.(수)~29.(금)) -

해양수산부(장관 문성혁)는 4월 6일(수)부터 29일(금)까지를 ‘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’ 기간으로 정하고,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.

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 등 유어(遊漁)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이다. 이에 해양수산부는 봄철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동·서·남해어업관리단,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. 또한,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해당지역 경찰서 및 (사)전국내수면어로어업인협회 등과 협력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.

이번 단속에서는 ①폭발물, 유독물, 전류(배터리)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*와 ②무면허·무허가·무신고어업**, ③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, 잠수용 스쿠버장비, 투망, 작살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·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*** 등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.

* 전류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 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

** 무면허·무허가어업 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

무신고어업 :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*** 유어행위 시 사용이 금지된 어구사용 위반 :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불법어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어획물과 불법어구류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할 계획이다. 특히, 여러 차례 적발된 위반자는 정부지원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에서도 배제할 방침이다.

고송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“귀중한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봄철 산란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”라며, “이번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질서가 확립되고,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.”라고 말했다.

내수면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을 목격한 사람은 불법어업 신고 대표전화(☎1588-5119) 또는 우편, 팩스, 카카오톡 메시지* 등을 활용하여 동·서·남해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.

* 카카오톡에서 동·서·남해어업관리단 등을 친구 추가한 뒤 메시지로 신고



참고 1

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금지 구역·기간 및 체장

품 명	금지구역	금지기간	금지체장
은 어	강원, 경북	4.20. ~ 5.20., 9. 1. ~ 10.31.	-
	그 외 지역	4. 1. ~ 4.30., 9.15. ~ 11.15. (단, 인공적으로 조성한 댐 지역에서 자원을 활용하려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자원을 평가한 후 한시적으로 포획허가 가능)	
연 어	전 국	10.11. ~ 11.30.	-
빙 어	전 국	3. 1. ~ 3.20.	-
쏘가리	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	4.20. ~ 5.30. (댐·호소는 5.10. ~ 6.20.)	18cm 이하
	그 외 지역	5. 1. ~ 6.10. (댐·호소는 5.20. ~ 6.30.)	
열목어	전 국	3. 1. ~ 4.30.	-
참 게 동남참게	강원도 (댐 제외)	8. 1. ~ 11.30.	5cm 이하
다슬기	전 국	12. 1. ~ 2.28.	각고 1.5cm 이하 (참·꽃게·주름·좁주름 다슬기 포함)
뱀장어	전 국 (댐·호소 제외)	10. 1. ~ 3.31. (단, 수산종자로 사용되는 15cm 미만 뱀장어는 포획 가능)	15cm 이상 ~ 45cm 미만
산천어	-	-	20cm 이하
송 어	-	-	12cm 이하
황 복	-	-	20cm 이하
기수재첩	-	-	- 섬진강: 각장 1.2cm 이하 - 그 외: 각장 1.5cm 이하
말조개	-	-	각장 9cm 이하

참고 2

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

가. 유형별 포상금 지급 금액

유 형	구 분		포 상 금 액	결정 기준
사법처분 ¹⁾	징역형	1년이상	300만원	법원 확정판결
		1년미만	200만원	
	벌금형		벌금액의 100분의 50 다만, 포상금액의 상한액은 300만원, 하한액은 50만원으로 함	
	집행유예		50만원	
	선고유예		20만원	
	기소유예		10만원	
행정처분 ²⁾	어업 등 행정처분	취소	200만원	행정기관의 집행 통보
		정지	100만원	
		경고	20만원	
과 태 료 ³⁾	과태료 부과		20만원	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

나. 동일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로 가목의 1), 2), 3)호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 및 1)호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금액 지급

다. “불법어업 검거공로자”의 포상금 지급 기준은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.

라. 수산자원 남획예방 및 어업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포상금액의 2배를 지급한다.

1. 무허가·무면허 어업(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)
2. 면허, 허가어업 외의 어업(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)
3. 암컷대게·외포란 꽃게 포획 및 체장미달 대게 포획·소지·유통·가공·보관 또는 판매(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, 제2호)
4. 어선의 사용제한(공조조업)(제64조 제4호)
5. 조업구역 및 금지구역 위반(수산업법 제98조 제8호,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)
6. 어구 과다사용 및 그물코 규격위반(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)
7. TAC 대상어종 지정판매장소 위반(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 제4호)

참고 3

내수면어업법 주요 위반행위별 처벌 규정

위반사항	벌 칙	비 고
◇ 폭발물·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·채취한 자 (유해어법 금지)	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	법 제19조 및 제25조
◇ 면허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한 자 (정치망어업, 공동어업)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	법 제6조 및 제25조
◇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한 자 (자망어업, 종묘채포어업, 연승어업, 패류채취어업, 낭장망어업, 각망어업)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	법 제9조 및 제25조
◇ 포획·채취 금지기간·구역 및 체장을 위반하여 포획·채취한 자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	법 제21조의2 및 제25조
◇ 불법으로 포획·채취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자유통·가공·보관 또는 판매한 자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	법 제22조 및 제25조 (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)
◇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 (투망어업, 어살어업, 통발어업, 외줄 낚시어업)	500만원 이하 과태료 (1차:100, 2차:200, 3차: :300만원)	법 제11조 및 제27조
◇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 (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, 잠수용 스 쿠버장비, 투망, 작살류, 다른 법령에 서 제한하는 장비) ※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허용한 지역 제외	300만원 이하 과태료 (1차:50, 2차:70, 3차: 100만원)	법 제18조 및 제27조

참고 4

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사진



비어업인의 실뱀장어 포획 계도



내수면 불법어업단속